



2012년 5월 07일

군사 작전

대성동 민사행정

---

\*본 규정은 1982년 4월 6일자 유엔사 규정 525-2 을 대체한다.

---

사령관을 대리하여:

존 D. 존슨  
미합중국 육군 중장  
참모장

//원본 서명자//

임재홍  
대한민국 육군 중령  
유엔사/연합사 부관참모

담당관:



GARRIE BARNES  
출판기록관리처

---

**요약.** 본 규정은 1982년 4월 6일자 유엔군사령부 (유엔사) 규정 525-2 **대성동 민사행정** 을 대체함. 본 규정은 대성동 마을과 대성동 관련 영농/어로 지역 및 이에 인접한 유엔사 통제하에 있는 군사 정전 위원회 본부구역 (군정위본부구역)으로 구성된 작전지역 (이하 대성동 작전지역이라 지칭함)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적용되는 정전협정과 정전협정 추후합의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필요한 일반적인 책임사항을 규명하고 실행함.

**변경사항 요약.** 본 문건은 상당부분 변경되었음. 본 문건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건의함.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민사행정, 민사업무, 민사작전, 민군작전,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 및 경계에 대한 정의를 제공함으로써 임무, 역할 및 기능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함.
- 대성동 작전지역에 적용되는 방침으로 언급된 “대성동의 민사행정을 위한 유엔군사령부 지침”을 삭제하고 본 규정의 제5항에 방침을 규정함.
-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군정위) 비서장과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 (유엔사 경비대대) 대대장의 과업과 책임을 확대하고,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 유엔사 부참모장,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 (한국군 경비대대) 대대장, 유엔사 공보장교 및 대성동 이장의 책임을 추가함.
- 대성동 작전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적용되는 유엔사 방침을 공표함.

**적용.** 본 규정은 대성동 작전지역에 출입 또는 거주하는 모든 군인 또는 민간인에 적용됨. 본 규정은 현 정전기간 중 적용되고, 정전기간은 유엔사 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인정하는 한 지속됨.

**추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부대번호 15294, 군우 96205-5294)의 사전승인 없이 예하 사령부가 본 규정에 대한 추가 부록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

**기록물 관리.** 본 규정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생성된 기록물은 미 육군 규정 25-400-2에 따라 파악, 유지 및 처리되어야 함. 기록 제목 및 설명은 <https://www.arims.army.mil>의 미 기록 정보 관리 시스템 (ARI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선 제안사항.** 본 규정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서 작성하였음. 의견이나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이 있을 시에는 미 육군성 양식 2028 (간행물 및 공백양식의 수정 건의)을 기재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부대번호 15294, 군우 96205-5294)로 제출하기 바람.

**배포.** 전자 매체 한정 (EMO).

## 목 차

1. 목적
2. 관련근거
3. 약어 및 용어 해설
4. 책임
5. 방침

별지, 12쪽

가. 관련근거

그림 1. 대성동 작전지역 지도, 16쪽

용어, 13쪽

## 1. 목적

본 규정은 대성동 마을, 대성동 관련 영농/어로 지역 및 이에 인접한 유엔사 통제하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군정위본부구역)으로 구성된 작전지역(이하 대성동 작전지역이라 지칭함)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규명하고, 방침을 기술하며, 참모부서 및 기타 기관 또는 부대에 책임을 부여한다. 본 규정 또는 관련근거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사항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문의한다. 본 규정에 포함된 방침 및 절차에 대한 모든 예외 신청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토 및 결심을 받는다. 각 신청서에는 신청일자과 예외 승인을 신청하는 근거를 표기해야 하고, 관련 조치를 협조할 수 있는 담당자를 명시해야 한다.

## 2. 관련 근거

요구되는 관련 간행물은 별지 가에 수록되어 있다.

## 3. 약어 및 용어 해설

본 규정에 사용된 약어 및 용어는 용어 해설란에 설명되어 있다.

## 4. 책임

정전협정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 중 하나이다. 정전협정상 책임이 있는 모든 지휘관들은 예하 인원들이 정전협정 및 관련 추후합의서의 제반조항과 본 규정의 세부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정전협정 제10항에 의거, 유엔사 사령관은 남측 비무장지대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성동 작전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가.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은 :

(1) 대성동 작전지역과 관련된 정전협정과 관련 추후합의서 및 적용 가능한 모든 유엔사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2)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필요한 유엔사 계획 및 방침을 정한다 (하기 5 항 참조).

(3) 대성동 작전지역 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대한 유엔사 계획, 방침 및 소요사항을 작성하고, 필요 시 유엔사 참모부서들과 협조한다.

(4)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의 유엔사 계획 및 방침 시행을 위해 참모 감독을 제공하고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감시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다음을 통해 유엔사 경비대대에 참모 감독을 제공한다.

(가) 유엔사 경비대대에 대성동 작전지역 관련 유엔사 규정, 계획 및 방침에 대한 자문을 권고한다.

(나) 이러한 규정, 계획 및 방침들을 해석하고 유엔사 경비대대가 이를 실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다) 이에 대한 유엔사 경비대대의 준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대의 실행 활동을 감독하고;

(라)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와 유엔사 부참모장을 통해 유엔사 경비대대의 준수 및 실행 수준을 유엔사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5) 하기 4 항 나(10)(나), 4 항 다(5)(마)(ii)에 명시된 비상상황 초기 대응 인원을 제외한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대성동 작전지역 출입에 대한 유엔사군정위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는 별지 가, 제 1 절 나 참조).

(6) 대성동, 과주시 및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협조한다.

(7) 대성동 작전지역 내 유엔사 관련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대성동 주민대표 회의에 참석할 유엔사군정위 대표를 지정한다.

#### 나. 유엔사 경비 대대장은:

(1) 대성동 작전지역 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실행하고 유엔사 사령관이 유엔사 경비대대장에게 부여한 하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한국군 경비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2) 본 지시에 명시된 업무 또는 조치와 관련된, 또는 관련될 수 있는, 모든 한측과 미측 인원들이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적절히 교육받도록 한다:

(가) 정전협정 기본 조항.

(나) 정전협정 제반조항에 의거한 개인별 업무 및 책임; 정전교전규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다) 유엔사 사령관의 명백한 승인없이 조선인민군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들과 함께 근무하는 인원들과의 친목행위 혹은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금지.

(라) 추정 혹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정전협정 위반행위의 보고 의무 및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

(3) 하기 5 항에 명시된 방침에 따라 대성동 작전지역 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실행을 통제하고 계획을 감독한다.

(4) 정전협정과 관련 추후합의서 및 유엔사 규정의 제반조항들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위기 혹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성동 작전지역 보호 및/또는 후송을 위한 우발계획을 수립한다. 유엔사 참모협조, 위기조치예규/유엔사 작전명령 수립과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 및 유엔사 부참모장 추후 검토를 위해 우발계획 및 이에 대한 수정사항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제출한다.

(5) 대성동 작전지역 내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수정사항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건의 및 제출한다.

(6) 적대적인 행위로부터 모든 아군측 인원, 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성동 작전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

(7)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나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국과 미국의 비상 화재, 의료 및 사법 기관과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한측 유관 기관 간 상호 지원 합의에 따라 유사시 신속한 응급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 대성동 작전지역으로의 모든 출입과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의 모든 이동 및 활동을 통제한다. 유엔사의 비상 대응능력은 비상상황을 완화시키고 한측 유관 기관에 책임을 신속하게 이양하기 위해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1 차 대응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서 승인한 인원만 출입이 허가되도록 대성동 작전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

(9) 대성동 작전지역 일대의 모든 아군 및 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하고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유엔사군정위 작전담당 부비서장 및 서울 지휘소에 보고한다 (절차는 별지가, 제 1 절 나 참조).

(10) 대성동 작전지역에 대한 반복적인 상시 출입을 요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한 비무장지대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상기 4 항 가(5) 참조)

(가) 이는 대성동 주민, 고용된 노무자, 대성동에 거주하지 않는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한다.

(나) 인명 보호, 심각한 신체적 상해 치료/예방 또는 시설물 훼손 처리/예방을 위해 비상활동이 필요할 시에는 사전협조 없이 출입이 승인된다.

(다) 기타 모든 출입을 위한 신청서는 상기 4 항 가(5)에 의거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로 제출해야 한다.

(11) 대성동 민사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대성동, 파주시 및 경기도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과 협조를 유지한다. 영농 작업자들을 위한 경계경호, 유엔사 규정에 대한 수정 제안, 대성동이나 대성동 학교 방문객 및 언론사 방문 등과 같이 유엔사가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 및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성동 주민 대표단과 분기마다 회의를 갖는다.

(12) 대성동 주민들에게 개인 소유 차량 및 농기구 (트랙터, 트럭 및 기타 차량 포함)에 대한 차량 출입증을 발급한다.

(13)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들이 (개인 차량 및 농기구 포함)이 (절차는 별지 가, 제 1 절 나 참조) 차량의 외부 전면 좌측에 부착할 청색 깃발을 발급한다.

(14)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차량 (전술 차량, 비전술 관용 차량, 민간버스, 개인 차량 및 농기구를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한다.

(15) 대성동 주민들과 야외 작업계획을 협조한다.

(16) 승인된 영농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성동 농민들과 이들이 고용한 인원들을 경호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 시 경계병력을 제공한다.

(17) 전체적인 임무 소요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한 지역에서 어로활동을 수행하는 대성동 농민들을 경호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 시 경계병력을 제공한다.

(18) 대성동 학교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통학버스가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 시 경계경호를 제공한다.

(19) 문산과 대성동 사이를 운행하는 민간버스가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 시 경계경호를 제공한다.

(20) 대성동 선거 시 투표 절차를 계획, 감독 및 통제한다.

(가) 투표소 설치 및 운영.

(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투표 절차 감시.

(다) 개표 확인 및 투표결과 발표.

(21) 대성동 및 인근 영농지역에서의 모든 공사가 유엔사 규정 551-4 의 비무장지대 공사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 **다. 한국군 경비 대대장은: (유엔사 경비 대대장의 작전 통제하에서)**

(1) 유엔사 경비대대장의 실행지침과 하기 5 항에 기술된 방침에 의거하여 대성동 작전지역 내 민사행정 및 구제작업에 대한 계획을 건의하고 실시한다.

(2)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작업을 실행할 때 정전협정과 관련 추후합의서 및 유엔사 규정의 제반조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규, 작전명령, 방침서한 등과 같은 실행지침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엔사 경비대대장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실행지침 및 이에 대한 수정사항을 유엔사 경비대대장에게 건의한다.

(3) 정전협정과 관련 추후합의서 및 유엔사 규정의 제반조항들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위기 혹은 비상상황 발생 시 대성동 작전지역 보호 및/또는 후송을 위한 우발계획을 건의한다.

(4) 대성동 작전지역 내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수정사항을 유엔사 경비대대장에게 건의 및 제출한다.

(5) 유엔사 경비대대장의 작전통제하에서 하기 부여된 과업을 실행한다:

(가) 적대적인 행위로부터 모든 아측 인원, 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성동 작전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

(나)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나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국과 미국의 비상 화재, 의료 및 사법 기관과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한측 유관 기관 간 상호 지원 합의에 따라 유사 시 신속한 비상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 대성동 작전지역으로의 모든 출입과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의 모든 이동 및 활동을 통제한다. (전문용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나(4)에

의거하여)유엔사의 비상 대응능력은 비상상황을 완화시키고, 한층 유관 기관에 책임을 신속하게 이양하기 위해,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1 차 대응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서 승인한 인원만 출입이 허가되도록 대성동 작전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

(라) 대성동 작전지역 일대의 모든 아군 및 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하고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유엔사 경비대대장에게 보고하여, 위반사항이 유엔사군정위 작전담당 부비서장 및 서울 지휘소에 보고되도록 한다 (전체 책임목록은 별지 가, 제 1 절 나 참조).

(마) 대성동 작전지역에 대한 반복적인 상시 출입을 요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한 비무장지대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상기 4 항 가(5) 참조)

(i) 이는 대성동 주민, 고용된 노무자, 대성동에 거주하지 않는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및 대성동 비거주 학생들의 학부모를 포함한다.

(ii) 인명 보호, 심각한 신체적 상해 치료/예방 또는 시설물 훼손 처리/예방을 위한 비상활동이 필요할 시 이는 사전협조 없이 출입이 승인된다.

(iii) 기타 모든 출입을 위한 신청서는 상기 4 항 가(5)에 의거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로 제출해야 한다.

(바) 대성동 주민들에게 개인 소유 차량 및 농기구 (트랙터, 트럭 및 기타 차량 포함)에 대한 차량 출입증을 발급한다.

(사)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들이 (개인 차량 및 농기구 포함)이 차량의 외부 전면 좌측에 부착할 청색 깃발을 발급한다 (절차는 별지 가, 제 1 절 나 참조).

(아)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차량 (전술 차량, 비전술 관용 차량, 민간버스, 개인 차량 및 농기구를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한다.

(자) 대성동 주민들과 야외 작업계획을 협조한다.

(차) 승인된 영농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성동 농민들과 이들이 고용한 인원들을 경호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 시 경계병력을 제공한다.

(카) 전체적인 임무 소요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한 지역에서 어로활동을 수행하는 대성동 농민들을 경호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 시 경계병력을 제공한다.

(타) 대성동 학교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통학버스가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 시 경계경호를 제공한다.

(파) 문산과 대성동 사이를 운행하는 민간버스가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 시 경계경호를 제공한다.

(6) 대성동 민사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대성동, 과주시 및 경기도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과 협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 유엔사 경비대대장을 지원한다. 영농 작업자들을 위한 경계경호, 유엔사 규정에 대한 수정 제안, 대성동이나 대성동 학교 방문객 및 언론사 방문 등과 같이 유엔사가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 및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성동 주민 대표단과 분기마다 회의를 갖는다.

(7) 대성동 선거 시 투표 절차를 계획, 감독 및 통제하는 데 있어 유엔사 경비대대장을 지원한다.

(가) 투표소 설치 및 운영.

(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투표 절차 감시.

(다) 개표 확인 및 투표결과 발표.

(8) 대성동 및 인근 영농지역에서의 모든 공사가 유엔사 규정 551-4의 비무장지대 공사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지원한다.

라. 유엔사 기획부 참모장은: 유엔사의 대성동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위한 계획 및 방침 수립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한다.

마. 유엔사 공보장교는:

(1) 언론사의 대성동 작전지역을 포함한 모든 비무장지대 출입신청서를 검토한다.

(2) 언론사의 모든 대성동 작전지역 출입신청서에 대한 승인/불승인 여부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건의한다.

(3) 대성동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언론단체를 위해 유엔사 공보실 안내인원을 배정하거나 유엔사 공보실 안내인원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및 개인을 지정한다.

(4) 모든 언론사 소속 인원들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정전협정 추후합의서에 따라 식별용 청색완장을 착용해 신분이 파악되도록 한다.

바. 대성동 이장은:

(1) 대성동의 전반적인 관리, 복지 및 행정을 책임진다.

(2) 대성동 민사행정중대, 한국군 경비대대장, 유엔사 경비대대장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측에 대성동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3) 대성동 농민들이 일일 야외작업 계획을 사전에 대성동 민사행정 중대와 협조하도록 한다.

(4) 필요 시 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또는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요청 시 영농 작업자들을 위한 경계경호, 유엔사 규정에 대한 수정 제안, 대성동이나 대성동 학교 방문객 및 언론사 방문 등과 같이 유엔사가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 및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

(5) 필요 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혹은 비서장의 대리인)과 회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 및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6) 대성동 주민의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7) 언론사의 모든 대성동 작전지역 출입신청서에 대해 동의/부동의 여부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건의한다.

## 5. 방침

가. 배경. 대성동은 정전협정 추후합의서에 의거 허가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와 지원 하에 유엔사가 설립하였다.

(1) 대성동의 모든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유엔사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거주한다.

(2) 대성동 주민 및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민형사법, 법규 및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국 법률, 법규 및 규정 위반자는 대한민국의 지방 또는 중앙 정부의 적절한 사법 기관에 회부될 수 있다.

(3) 그러나, 이들의 접근, 이동 및 활동은 또한 대성동 작전지역 내의 인원, 시설 및 재산의 안전, 보호와 경계의 보장을 책임지는 지정된 군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나.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의 이동 통제. 정전협정 및 추후합의서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구성원들 및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히 출입을 허가한 기타 인원들에게는 대성동 작전지역으로의 출입 및 그 안에서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가 허가된다.

다. 대성동 내 거주. 정전협정 및 추후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 수립 이전에 비무장지대 내에서 거주하던 민간인들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그 곳에서 거주하기 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1) 원 주민은 대성동에 상시 거주지를 유지하며 이 곳에서 1년 중 최소한 8개월 (240 일) 간 숙박하는 경우에만 주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년 중 4개월 이상을 마을 외부에서 거주하는 자는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허가한 예외적인 경우 (예: 입원, 대성동 외부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대성동 외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군 복무를 위해)가 아닌 이상 대성동에서 거주하고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허가한 예외적인 경우는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와 유엔사 부참모장 검토를 위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보고해야 한다.

(2) 대성동 주민 수의 변화는 출산, 사망, 합법적인 입양 또는 대성동 원 주민의 세대로 대성동 외부에서 혼인을 통해 편입되는 여성을 통해 발생한다. 유엔사는 혈통 및 상속과 관련한

대한민국 법률을 존중한다. 그러나, 시설물 및 농지를 포함한 대성동 영농 혹은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유엔사 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대성동에 거주하는 취학연령 아동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유엔사군정위는 대성동 주민이 아닌 아동이 대성동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치단체의 요청을 승인하였다. 대성동 내 임시 체류 인원, 즉 교직원과 학생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대성동 원 주민은 비무장지대 임시출입증을 발급받는다.

(5) 대성동 주민은 주간에는 캠프 보니파스 브라보 초소까지와 대성동 마을 내부 그리고 협조 및 허가된 대성동 영농/어로 지역 (전문용어 ‘대성동 작전지역’에 정의)에서의 이동의 자유가 통상적으로 허가되지만, 지정된 구역 외부에 위치한 어로 지역으로의 이동, 이 지역 주위에서의 이동, 그리고 이 지역으로부터의 이동 시에는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 및 한국군 제 1 보병사단과의 추가 협조가 필요하다. 대성동 주민이 유엔사군정위 및 현지 부대 지휘관의 특별한 허가 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스위스, 스웨덴 대표단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캠프, 비무장지대 내 군사기지/시설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인원은 체포되어 지역 내 한국 정부의 사법기관에 회부되거나 대성동 주민 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 될 수 있다.

(6) 위기 상황이나 자연재해 또는 군사 상황 악화시, 유엔사는 대성동 작전지역의 모든 비전투요원을 비무장지대 밖의 안전한 피난처나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후송하도록 명령하고 지원할 수 있다.

(7) 대성동 주민들은 유엔사와 대한민국의 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장을 주민들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다.

라. 대성동에서 초청한 방문객, 상시 또는 반복적인 대성동 출입을 요하는 방문객들은 비무장지대 임시출입증을 발급받는다.

(1)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성동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 노무자, 대성동 초등학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 인명의 보호,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치료/예방 또는 시설의 훼손 해결/방지를 위해 필요한 비상활동을 위해서는 사전협조 없이 출입이 승인된다.

(3) 기타 출입을 위한 모든신청은 반드시 상기 4 항 가 (5)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로 제출해야 한다.

마. 차량. 대성동 주민들은 개인 차량 및 농기구 (트랙터, 트럭 및 기타 차량 포함) 운행을 위한 차량 출입증을 발급받는다. 출입증 발급이 가능한 차량 대수는 가구 당 두 대로 제한한다.

(1) 전술용 차량, 비전술용 관용 차량, 민간버스, 개인 차량 및 농기구를 포함해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유엔사 규정 551-4 및 551-5 에 기술된 바에 따라 차량의 외부 전면 좌측에 적절한 차량 표식 깃발을 부착한다.

(2) 전술용 차량, 비전술용 관용 차량, 민간버스, 개인 차량 및 농기구를 포함해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모든 관련 유엔사 규정과 대한민국의 차량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

(3) 본 방침에 대한 예외 적용 요청은 본 규정 제 1 절 1 항에 의거해서 제출되어 질 수 있다.

바. 영농. 대성동 농민들은 일일 실외작업 계획을 대성동 민사행정중대와 협조해야 한다. 협조된 구체적인 소요에 의거해 대성동 민사행정중대는 적절한 경호병력을 배치하고, 경계절차를 지시하며, 출입시간과 해당 농민 및 이들이 고용한 자들이 승인된 영농/어로지역에서 작업 하는 동안 준수해야 하는 기타 지침을 규정한다.

사. 학교. 2011년 12월 1일부로 유엔사가 승인한 대성동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35명이다. 학생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성동 초등학교 교장 혹은 그보다 직급이 높은 교육청 관계자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승인에 앞서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 및 유엔사 부참모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신청서는 대성동 이장과 관련 대한민국 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자신의 경계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유엔사군정위가 정전협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승인될 수 있다.

아. 민간 운수. 민간버스의 운행은 유엔사 경비대대가 결정하고 제공하는 적절한 경계경호 하에서 캠프 보니파스의 “A”초소에서 대성동 간 노선에서 허가된다.

(1) 민간버스의 운행 일정은 다른 우선 경계소요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 통학버스는 대성동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성동 초등학교까지/로부터 운송하도록 허가된다.

(2)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차량 외부 전면 좌측에 청색깃발을 부착한다.

자. 어로. 대성동 주민들은 유엔사군정위가 승인한 영농지역 내의 저수지에서 대성동 민사행정중대와 협조를 거쳐 어로활동을 하도록 허가된다. 주민들의 어로활동은 적절한 경계경호 하에서만 실시되며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결정하는 경계자원의 가용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차.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의 민군작전. 정전협정 제 10항은 유엔사 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대성동 작전지역의 경우, 민간인 거주 및 영농/어로를 위한 비무장지대 지역의 경계를 위해 필요한 군사통제 및 관할로 인해 배제되는 기능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통상적인 기능 대부분을 대한민국 당국이 제공한다.

(1) 본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른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제한된 수의 민군작전 과업을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유엔사 통제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대성동 중대는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임무를 실시한다:

(가) 대성동 출입 통제를 위한 초소 근무, 마을 주민, 시설 및 재산의 방호 및 보호를 위한 순찰 및 감시 활동 및 일별 주민 거주 현황 확인을 통해 대성동 마을의 안전 확보.

(나) 대성동 주민과 대성동 출입 허가를 받은 정비/공사 장비를 포함해 모든 방문객에 대한 차량 경호 제공.

(다) 부대방호 태세 강화 기간 중 경계 조치 강화.

(라) 한국의 유관 경찰 조사당국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범죄 발생 지점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파주 경찰서와 협조 및 지원 제공.

(마) 음주 운전 금지를 포함한 도로/고속도로 안전 확보.

(바) 위기상황, 자연재해 및 군사상황 악화 시 비전투원 후송.

(사) 인명 보호, 신체 상해 치료/예방 또는 시설 훼손 처리/방지를 위해 필요 시 한국 비상 대응반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촉진시키거나 초기 대응인원을 제공.

(아) 유엔사가 통제하는 비무장지대 내 지역에서 대성동 주민, 선출직 공무원 및 기타 한국 지방정부 관계자들과의 노력통합을 위해 협조.

(자) 대성동 지역 선거 투표를 지원.

(2) 합동교범상에 정의된 민사작전은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 허가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민간정부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혹은 시설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민군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민사작전을 통상적으로 허가한다. 지역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제공할수 있는 지역에서는 민군작전 수행을 강화시키기 위한 민사부대의 기능적 전문기술 활용은 요구되지 않는다. 대성동 작전지역의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유엔사 통제 하에서 요구되고 수행되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기능을 제외하고는 현재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기능 대부분을 제공한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민사작전을 허가하고 있지 않으며 유엔사는 현재의 정전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작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카. 언론사의 대성동 출입 신청. 정전협정 추후합의서에는 보도매체의 대성동 작전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방문에 관한 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1) 언론사의 대성동 방문은 반드시 유엔사 공보실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가용 경계자원으로 지원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해야 한다.

(2) 신청서는 최소 72 시간 이전에는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요구된다.

(가) 방문단체의 규모와 구성.

(나) 비무장지대 출입 시간 및 지점.

(다) 비무장지대 내 방문 지역.

(라) 출입 사유.

(3) 보도매체의 소속인원은 공보장교, 선임 공보부사관 혹은 유엔사 공보실에서 지정한 동급의 민간인 공보담당직원과 항상 동행한다.

(4) 보도매체의 소속인원은 정전협정의 모든 제반조항을 준수하고 정전협정 추후합의서에 요구된 바에 따라 식별을 위한 청색완장을 착용하며 동반 경계경호 병력의 구체적인 안전지시를 준수한다.

타. 비무장지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민간 차량 및 용역업체 직원. 비무장지대 외부 민간 용역업체 직원 및 차량의 대성동 작전지역 출입을 위한 신청서는 관련 대성동 주민이 대성동 민사행정중대 및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방문단체의 규모와 구성
- (2) 비무장지대 출입시간 및 장소
- (3) 방문 지역
- (4) 출입 사유

(5) 해당 인원은 적절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으며, 자신의 신분이 작업인원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정전협정에 따라 뱃지 혹은 완장을 착용한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차량의 외부 전면 좌측에 청색 깃발을 부착한다.

별지 가  
관련 근거

제 1 절. 필수 문건

가. 1953년 7월 27일자 정전협정 제1권 (제7, 8, 9, 10, 11항) 및 정전협정 추후합의서

(1) 1953년 8월 3일 제 6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체결된 추후합의서 “F”; 대성동을 설정하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명문화한 문서

(2) 1953년 9월 16일 제19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된 추후합의서 “G”; 비무장지대 내 인원 및 차량의 증명서, 휘장 및 표식을 규정한 문서

(3) 1953년 7월 30일 제 3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추후합의서 “Q”; 비무장지대 내에서 헌병이 민간경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한 문서

나. 유엔사 규정 551-4 (정전업무 - 한국 정전협정 준수)

다. 유엔사 규정 525-4 (정전 교전규칙)

라. 유엔사/연합사 편성 및 기능 편람

제 2 절. 관련 문건

가. 유엔사 규정 551-5 (비무장지대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

나. 미 합동교범 1-02 (미 국방부 군사 및 관련 용어 사전)

다. 미 합동교범 3-68 (비전투원 후송작전)

다. 미 합동교범 3-57 (민군작전)

## 용어해설

### 제 1 절. 약어

AA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한국정전협정
AO	Area of Operations	작전지역
CA	Civil Affairs	민사업무
CAO	Civil Affairs Operations (CAO)	민사작전
CC Seoul	Command Center, Seoul	서울 지휘소
CDR	Commander	사령관/지휘관
CFC	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사/한미연합사령부
CMO	Civil-Military Operations	민군 작전
DCS	Deputy Chief of Staff	부참모장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DOD	Department of Defense	미 국방부
JP	Joint Publication	합동교범
KPA	North Korean People's Army	조선인민군
MACHA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adquarters Area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PAO	Public Affairs Officer	공보장교
POV	Privately owned vehicle	개인 소유 차량
ROK	Republic of Korea	한국/대한민국
ROKA	Republic of Korea Army	대한민국 육군
ROKG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정부
ROKSB	Joint Security Area Republic of Korea Army Security Battalion	한국군 경비대대/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
UNCMAC SM	Senior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
TSD	Taesong-Dong	대성동

TSD AO	The area of operations comprising the village of Taesong-dong, its associated farming/fishing areas and the adjacent portion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adquarters Area und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control	대성동 작전지역 유엔사 통제하에 있는 대성동마을, 대성동 관련 영농/어로 지역 및 이에 인접한 군정위 본부구역을 포함한 작전지역
UNC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군사령부 (유엔사)
UNCMAC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군정위)
UNCMAC SEC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ecretary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UNCSB	United Nations Command Security Battalion-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유엔사 경비대대
U.S.	United States	미국

## 제 2 절. 전문용어

**민사행정.** (1) 우군 지역에서 해당 지역정부와의 합의하에 지역정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또는 (2) 미군이 주둔하는 적대적인 지역에서 토착 민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외국정부가 행정, 입법 및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정부가 수립하는 행정.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본 규정에서 대성동 작전지역에 적용되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통상적으로 지역정부가 수행하는 권한 중 특정 권한을 유엔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5 항 차 참조)

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사는 대성동 작전지역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제공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당국과 협조 및 협력한다. 유엔사는 유엔사 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인정하는 한, 또는 한국의 유관 정부기관이 대성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할 수 있을 때까지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을 제공한다.

나. 대성동은 유엔사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비무장지대 내 지역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대성동 작전지역 내의 모든 아군측 인원, 시설 및 재산을 적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지 않은 행위 또는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방지하며, 필요 시 비상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대성동 작전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사는 해당 시점의 군사 상황에 따라 대성동 작전지역 내의 모든 출입, 이동 및 활동에 대한 권한과 통제를 행사한다.

다. 위기상황, 자연재해 및 군사상황 악화 시 유엔사는 모든 비전투원을 대성동 작전지역으로부터 후송하도록 명령하고 지원할 수 있다.

라. 유엔사는 초기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유엔사의 자원은 한국의 유관 기관이 상황을 인수할 수 있을 때까지 위협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완화시키고, 재산 피해 (화재

등)를 경감 또는 억제하며, 부상을 완화시키고, 위험에 처한 인원을 안정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비상 지원만을 위한 것이다.

마. 유엔사는 안전과 경계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성동 실외작업 활동을 협조한다. 이와 유사하게, 유엔사는 대성동 마을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엔사 활동과 관련해서 대성동 이장과 회의를 갖고 협조한다.

바. 유엔사는 대성동 선거 시 원활한 투표를 위해 필요 시 지원을 제공한다.

**민사부대.** 민사작전을 수행하고 민군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편성·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현역 및 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로 CA 라고도 칭한다. (합동교범 3-57) (본 용어와 정의는 기존 용어와 정의를 대체하며, 합동교범 1-02 의 차기 개정판에 포함되도록 승인됨.)

**민사작전.** (1)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과 민간 당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2)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현지 주민, 기관 및 민간 부문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3) 민군작전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상 민간정부의 책임분야인 기능별 전문기술의 활용을 포함하는 민사부대 병력이 수행하는 군사작전으로 CAO 라고도 칭한다. (합동교범 3-57). 상기 정의된 민사작전은 현재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 허가되거나 실시되지 않는다 (5 항 차 참조).

**민군작전.**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고, 미국의 작전 목표를 통합하고 달성하기 위해 우호적, 중립적, 혹은 적대적 작전지역 내에서 군,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당국, 일반 대중 간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활용하는 지휘관의 활동. 민군작전은 통상적으로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활동 및 기능을 군이 수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군사적 조치 이전, 중간, 혹은 이후에 진행될 수 있다. 지시가 있을 경우, 이러한 활동은 다른 군사작전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 민군작전은 지정된 민사부대, 기타부대, 또는 민사부대와 기타부대가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CMO 라고도 칭한다. 민사작전 참조. (합동교범 3-57). 민군작전은 5 항 차에 명시된 조치와 유엔사 규정 551-4 에 의거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허가되거나 실시되지 않는다.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대성동 평화의 마을 (마을 농민들이 사용하고 경작하는 주변 영농지역 및 연못을 포함) 및 241 관측초소 (아울렛 초소)의 경계를 제공하고 유엔사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히 편성, 증원되고 장비를 갖춘 3 군사령부 소속 별도의 보병대대.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은 한국군 경비대대에 대한 유엔사 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경계.** (1) 군 부대, 군 활동 또는 군 시설의 유효성을 저해시킬 의도가 있거나, 저해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2) 적대 행위 혹은 적대적인 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어책을 수개하고 유지함으로써 달성한 상태.

상기 정의된 경계는 대성동 작전지역의 경계를 담당하는 헌병을 포함해 비무장지대 전역의 헌병에게 적용된다.

**참모 감독.** 사령관 예하의 기타 참모부 및 개별 인원들에게 사령관의 계획 및 방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러한 계획과 방침을 해석하며, 참모부가 이를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 준수 정도를 파악하여 사령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절차.

**대성동 작전지역.** 남측 비무장지대 내 좌표 52SBH 95970200 지점의 마을과 좌표 52SBG 96999970 지점에서부터 군사분계선을 따라 북서쪽으로는 52SBH 95560321 지점을 경계로 하고, 북동쪽으로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52SBH 98940296 지점을 경계로 하며, 남쪽으로 비포장도로를 따라 제 1 보급로 52SBH 99360133 지점으로 이어지고, 군사분계선을 따라 농지를 가로질러 다시 남서쪽으로 돌아와 남쪽으로는 52SBG 96999970 지점을 경계로 하는 주변 농지 및 유엔사 군정위본부구역 (그림 1 지도 참조)의 인접 부분을 포함하는 지역.

**대성동 민사행정 중대.**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 유엔사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 (한국군 경비대대)의 헌병 중대. 본 중대는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 (유엔사 경비대대) 대대장의 작전통제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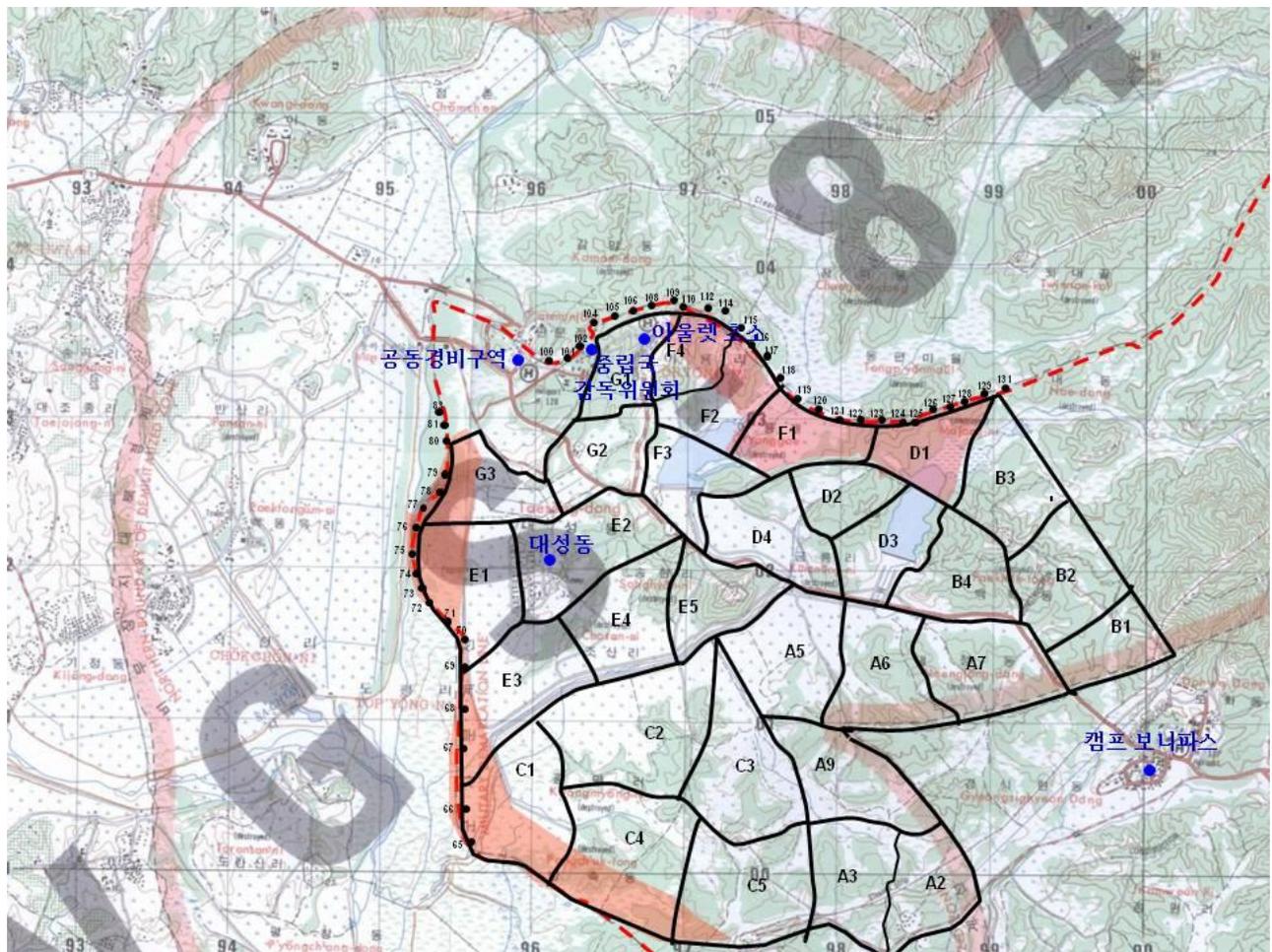


그림 1. 대성동 작전지역 지도